

제8장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
제59조(내부거래등의 승인)

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- 1.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2.회사의 주요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), 특수관계인, 이사, 감사와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. 다만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 총액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이사회는 제1항의 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.